

윤 활 법령

##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(폐기물정보시스템)

☞ 시스템 사용 법적 의무화(시행일 : 2008. 8. 4)

- ▷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·운반·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(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)

임종찬 부장(한국윤활유공업협회)

### ▣ 법적근거

- 가. 폐기물관리법 제44조(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)
  - 환경부장관은 제25조 제4항·제5항, 제25조의2 제2항 및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  -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나.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(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)
  - 환경부장관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 산 처리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,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

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.

- 다.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 및 사용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 제2004-132호)

### ▣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(All-baro시스템) 이란?

- 산업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동 관리하는 폐기물적법시스템을 말한다.
- 사용대상자
  - 가. 지정폐기물배출업소 (유역 (지방) 환경청 관할)
  - 나.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 : 종합병원, 일반병원
  - 다.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업소
  - 라. 이와 위·수탁 계약을 한 운반·처리업자

### 1. 개요

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 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·중간처리·최종처리의 전

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동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Allbaro시스템이라 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.

## 2. 도입배경

산업폐기물의 적법처리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이전표(4매 간이인계서)를 이용한 폐기물처리 증명제도가 1999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인계서 제도는 시간과 우편요금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감시·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적법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폐기물의 전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임.

## 3. 사용대상자

폐기물관리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, 법 제25조의2 제2항 및 동법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와 동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폐기물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업자

## 4.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(고시)

- ① 폐기물배출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 을 하여야 한다.
- 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등록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·성상, 인계 일자, 차량번호, 수집·운반자명, 처리자명, 처리장소, 처리방법, 인계자명, 위탁량, 확정 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

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예약등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인계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-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배출자가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을 한 때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, 배출자는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## 5. 수집·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 번호 전달(고시)

- ①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 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- ②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, 폐기물종류·성상, 수집·운반 차량번호, 인수일자, 인수량, 인계일자, 처리업자명, 인계자명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기물 인계일자, 폐기물운반 차량 번호, 인계자명은 폐기물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,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는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.

## 6. 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등록(고시)

-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

이내에 인계번호, 배출자명, 폐기물종류·성상, 차량번호, 인수량, 처리방법, 인수일자, 인수자 명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, 처리일자 등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7. 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(고시)

- ① 사용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당일 24:00 까지 수정할 수 있다.
-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오류인계정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정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자는 수정 또는 등록을 요청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.

## 8. 다음의 공휴일은 폐기물정보시스템 등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- ① [근로기준법] 토요일  
 ② [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] 근로자의날  
 ③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 일요일, 국경일중 3·1절, 광복절 및 개천절, 1월 1일,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, 석가탄신일(음력 4월 8일), 5월 5일(어린이날), 6월 6일(현충일),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, 12월 25일(기독탄신일),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,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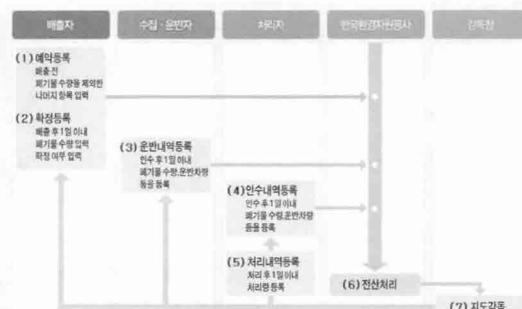
### ▣ 인계서 작성체계도

#### 1. 종전의 폐기물인계서 전달 체계



- ① 배출자는 폐기물인계서를 1매 보관하고 5매는 수집·운반자에게 전달
- ② 운반자는 1매보관하고 4매를 처리업자에게 전달
- ③ 처리업자는 1매보관하고 1매는 3일이내 배출자에게 전달하고, 2매는 관할 환경청에 전달
- ④ 행정기관은 1매를 배출자 관할 행정기관에 7일이내 송부

## 2. 전자인계서 처리 체계



※ 1일이라 함은 다음날 24:00(자정)까지를 말함.

#### (1) 배출자 예약등록

배출자에게 자체 계근대가 없어 인계폐기물을 외부에서 계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배출예상정보를 시스템에 예약 등록한다.

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·운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등록된 정보를 조회하여 확정등록을 하여야 한다.

#### (2) 배출자 확정등록

1번과 같이 사전에 인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등록을 생략하고, 폐기물 수집·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함과 동시에

에 배출내역 등록 항목을 일괄 입력하여 등록한다.

(3) 수집·운반자

배출자에게 인수 후 1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처리자에게 인계 후 1일 이내에 수집·운반내역 정보를 등록한다.

(4) 처리자 인수내역 등록

폐기물 인수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정보를 등록한다.

(5) 처리자 처리내역 등록

인수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후 2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등록한다.

(6) 한국환경자원공사

1~5에서 입력된 사항을 전산처리하여 이를 환경 관리청에 통보한다.

(7) 감독청

환경관리청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통보한 전산 처리내역 중 사고인계정보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·감독업무 수행

(예)

**윤활유 포장용기의 경우**

**문1) 윤활유 용기를 2008년 5월 2일에 회수하여 5월 6일에 처리하였다면 언제 까지 전자인계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?**

- ☞ 1. 수집운반 정보 등록 :  
5월 6일 24:00까지 입력
- ☞ 2. 처리내역 등록 :  
5월 8일 24:00까지 입력하여야 함.  
※ 토, 일,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등록일자에서 제외됨.

**문2) 문1에서 등록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**

- ☞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업체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고
- ☞ 업체는 수정받은 다음날 24:00까지 오류정보를 정정할 수 있음.

**환경부고시 제2004-132호**

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운영 및 사용등에 관한고시(환경부고시 제2002-134, 2002. 8. 29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04. 8.27.

환경부장관

**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**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(이하“폐기물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설치·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.
2. “전자인계서”라 함은 법 제25조 제4항·제5항, 법 제25조의2 제2항 및 법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유·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4. “기초정보”라 함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,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

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,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서,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·승인서, 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서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구축한 자료를 말한다.

5 “오류인계정보”라 함은 사용자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와 실제로 인계·인수한 폐기물의 인계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정보시스템에서 오류정보로 나타나는 인계정보를 말한다.

**제3조(폐기물정보시스템 주소)** 폐기물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[www.wms-net.or.kr](http://www.wms-net.or.kr)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.

**제4조(전산처리기구)**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.

**제5조(사용자 등의 주요업무)**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(이하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#### 가. 사용자

1. 기초정보 확인
  2. 전자인증서 관리
  3. 전자인계서 예약등록 또는 확정등록
  4.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(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·운영자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인계번호 전달
  5.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
  6. 폐기물처리실적 등록(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)
- 나.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
1.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
  2. 업무담당자 등록

#### 3. 오류인계정보 처리

#### 4. 인계서의 검인

#### 5. 지도단속결과 등록

#### 다. 전산처리기구의 장

1.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
2.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
3. 인수인계정보의 확인·통보
4. 자료의 보존
5.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
6. 교육 및 홍보
7. 비밀유지업무
8.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

**제6조(사용대상자)**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 인계서 등의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법 제25조 제4항·제5항, 법 제25조의2 제2항 및 법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와 폐기물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

**제7조(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)**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대상자 기초정보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초정보를 요청 받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용대상자의 공고)**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중 폐기물정보시스템 사용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사용대상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된 내용을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사용신청 및 승인)**

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용대상자로 공고한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폐기물정보시스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대상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를 전산처리 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,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,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사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전자인증서의 발급·설치 및 관리)**

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는 폐기물정보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,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
③ 사용자가 전자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)**

① 폐기물배출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등록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·성상, 인계일자, 차량번호, 수집·운반자명, 처리자명, 처리장소, 처리방법, 인계자명, 위탁량, 확정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예약등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인계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배출자가 확정등록 또는 예약등록을 한 때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, 배출자는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집·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)**

①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
②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, 폐기물종류·성상, 수집·운반차량번호, 인수일자, 인수량, 인계일자, 처리업자명, 인계자명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기물 인계일자, 폐기물운반 차량번호, 인계자명은 폐기물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,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는 당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등록)

-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·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, 배출자명, 폐기물종류·성상, 차량번호, 인수량, 처리방법, 인수일자, 인수자명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, 처리일자 등을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# 제14조(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)

- ① 사용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당일 24:00까지 수정할 수 있다.
-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오류인계정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정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자는 수정 또는 등록을 요청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(업무담당자 등록)

-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폐기물정보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.

### 제16조(인계서의 검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처리증명 대상사업자의 폐기물 인계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사항을 폐기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허위자료 등의 통보)**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
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

3. 폐기물의 보관 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

### 제18조(교육 및 홍보)

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 대상자로 공고한 자에 대한 폐기물정보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19조(비밀유지업무)**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폐기물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0조(등록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일)**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
2.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
3.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고시 폐지)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운영 및 사용등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보시스템의 사용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용자로 본다.

<별지 제1호 서식>  
승인번호 : ○○ 제200-호

###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승인서

귀 업체의 200 년 월 일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

#### 1. 업체정보

업체명		업 종	①배출자 ②운반자 ③처리자
주 소			
ID		PW	

#### 2. 유의사항

- ①사용(대상)자는 폐기물정보시스템 정보마당을 통해서 배출업체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②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1개 업체에 1개만이 부여되며,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③폐기물정보시스템에 최초로 접속하시면 전자인증서가 자동발급(또는 등록)되며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.
- ④사용자는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  - 1. 전자인증서 비밀번호 분실
  - 2.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
  - 3. (PC 포맷 등에 의한)인증서 분실
- ⑤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하고, 운반자는 운반 도중에 인계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번호를 함께 전달하셔야 합니다.
- ⑥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

## 전자인증서 재발급 신청서

회사명			업종 (중복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운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자		
주소						
대표자		연락처	Tel (      )- H.P (      )- FAX (      )-			
사업자등록번호	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-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-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		
담당자성명	(인)	주민등록 번호	-	<input type="checkbox"/> ID		
재발급 신청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비밀번호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밀번호 및 인증서의 누출 <input type="checkbox"/> (PC포맷 등에 의한) 인증서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재발급 사유를 자세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)					
첨부	담당자의 신원확인 증명서류 사본 1부.					

위와 같이 전자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 : ○ ○ 주식회사  
대표이사 ○ ○ ○ (직인)

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귀하